

문서번호	서울장학재단-352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8. 5. 15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제 22 호

담 당	부 장	사무국장	이사장
박소연		송연숙	대결 송연숙

I·SEOUL·U



2018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계획

2018. 5.

서 울 장 학 재 단

2018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계획

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희롱 방지 및 성 평등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서울장학재단 성희롱 예방 지침 제4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 고충사건 신고 처리 현황(최근 3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0건	0건	0건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2017~2018.4.30.일 현재)

교육년도	일정	참석대상/ 참석인원	교육방법 및 내용	비고
2018년	2018.3.7. 14:00~16:00 (2시간)	11명/11명 (100%)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희롱 등 폭력예방을 위한 사례중심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증 강사 교육	- 기관장참석 - 신규직원 교육
2017년	2017.6.21. 15:00~17:00 (2시간)	8명/8명 (100%)	- 내부직원에 의한 시청각 교육 - 여성가족부 교육 영상 자료	기관장 참석
	2017.12.5. 15:00~17:00 (2시간)	8명/8명 (100%)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인지관점에서 바라본 폭력에 대한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증 강사 교육	기관장 참석

II 추진 방향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성평등 문화 조성

III 추진 계획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

○ 고충상담 창구 : 사업운영부

- 성희롱 고충상담원 안내 표시 부착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 부서 내 설치 권장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성별
사업운영부	4급	이수현	서울희망 대학 장학사업 운영 등	여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으로 1명 지정(지정원칙 : 남, 녀 각1인 이상)

○ 주요 업무내용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시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3년(2016~2018년)이내 이수한 자가 있는 경우 제외

□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처리 시스템

- 내부 신고처리 시스템 절차



※ 장학생 등 외부 관계자 신고를 위한 신고처리 절차도 사무실내 비치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운영방법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
- 위원회 구성(안)
 - 위원 : 3명(기관장, 성희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2명)
 -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 포함 3인으로 구성 가능
 - ※ 위원장 :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 기타사항
 -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 고충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조치(성희롱예방지침 제12조)

- 비위행위자 부서 전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재단 규정 및 내규에 따른 성희롱 등 비위행위자 징계 조치

- 성희롱 징계기준 :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성희롱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 강등이상
-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에 의거 부서장의 연대책임 강화

□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상담 지원

- 교육시기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제공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 점검기간 : 6개월마다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점검방법 : 고충상담원 상담
- 점검내용 : 2차 가해 및 동료, 부서 내 갈등 여부, 심리상태 등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성평등 문화 조성

- 대상 : 재단 전 직원
- 내용 :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교육 방법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증 강사를 활용한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 교육 횟수 및 시간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각 연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IV 기대 효과

- 성희롱 방지 및 성 평등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붙임 성희롱 예방 지침 내규 1부. 끝